

체코 영주권 및 국적제도 안내(주체코대사관)

I. 영주권

1. 국가명: 체코공화국(Ceska Republika, Czech Republic)
2. 명칭: Povolení k trvalému pobytu / Permanent Residence Permit
3. 형태: 플라스틱 카드(적색, 청색 혼합)
4. 유효기간: 10년(10년 단위로 연장 가능)
5. 신청자격(취득조건)
 - 연속 5년간 체코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
 - 연속 2년간 체코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였으며 EU 시민과 1년 이상 가족관계에 있는 非EU 시민
6. 수속절차
 - 신청자 본인이 체코 내무부 또는 체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직접 제출(15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리 신청)
 - 신청서 : 체코 내무부 홈페이지(www.mvcr.cz)에서 다운로드 가능
 - 여권
 - 연속 5년간 체코에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 - 사진 2장
 - 거주지 증명서
 - 재정증명서
 - 체코어 어학증명서
 - (별도 요청시) 무범죄증명서
 -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, 체코어 어학능력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80일간만 유효함(단, 사진의 경우 외모의 변화가 없다면 제외)
 - 모든 서류는 체코어로 작성되어야 하며(체코어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 번역공증 필요),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이어야 함
 -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
7. 효력상실사유(취소사유)
 -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하거나 친자확인이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
 - 위·변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

- 임신, 출산, 중병, 학업, 취업 등의 중대 사유 없이 EU 외 국가에서 12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
- 체코 외 국가에서 6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
- 체코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
- (미성년자의 경우) 보호자의 영주권이 만료되는 경우
- 범죄행위로 인해 체코에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, 다른 EU 또는 쉥겐 국가에서 추방당한 경우
- 영주권 종료 90일전 기간연장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

8. 부활제도: 해당사항 없음

9. 포기제도: 체코 내무부 또는 체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고, 영주권 종료 3일 전까지 영주권 카드 반납

10.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: www.mvcr.cz(영주권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 불가)

11. 기타사항: 해당사항 없음

II. 영주권자

1. 국외체제 허용기간: 임신, 출산, 중병, 학업, 취업 등의 중대 사유 없이 EU 외 국가에서 12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, 체코 외 국가에서 6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 영주권 취소
2. 재입국 허가제도: 있음
3.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: 투표권을 제외하고 체코인과 동일한 지위와 혜택 부여
4. 기타사항: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며, 체코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

III. 국적제도

1. 국적제도의 규정법령(헌법, 국적법 등 관련 핵심내용): 시민권에 관한 법률 186/2013호(Act No.186/2013 Coll., On Citizenship of the Czech Republic)에 의거하여 체코 시민권 취득 및 상실 조건, 관련 기록 보존 등에 관해 규정
2. 국적취득조건: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- 가족관계, 직업적, 사회적으로 체코 사회에 융합되어 있음
 - 체코의 안보, 주권, 민주주의, 건강 등을 위협하지 않음
 - 체코 영주권 소지(非EU 시민인 경우 최소 5년 이상 영주권 소지)

